서울특별시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19

제출년월일 : 2011. 3.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안 제6조)

서울시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나.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

1)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2) 위촉직 위원은 대형유통기업대표, 전통시장, 수퍼마켓 등 중소상인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함

다.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업무 (안 제10조)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상생발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안 제12조)

1)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함

마.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안 제14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바. 조건 등의 부과 (안 제15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포를 개설등록하고자 할 경우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제정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의3

4. 조례안

따로붙임

5.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10. 12. 30 ~ 2011. 1. 19)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 2.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 및 백화점과 제3호에 의한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마포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관내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마포구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마포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마포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마포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 마포구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 마포구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상공회의소 관계자
5.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6.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마포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마포구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5조에 따른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마포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마포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마포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마포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포구의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의 제10조제7호·제8호 · 제9호 및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